

이글은 지난해 12월호 일본 세계의 축산지에서 번역하여 게재된 것이다. (편집자註)

“세계의 유업” “오스트레일리아편” (3회)

オーストラリア酪農產業에 對한 政府援助 改革草案

-産業援助委員會에 보내는 農業經濟局報告書 -

II. 現行政府介入메카니즘의 背景

1. 概要

가공용 및 음료용 생유의 생산 및 유통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일련의 제도적 조치에 의해 규제·관리되고 있으며, 생유의 최종적인 판매는, 상호관계는 있으나 두개의 분리된 부문, 즉 음료용 생유부문과 가공원료용 생유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이를 제도적인 조치는 낙농산업을 수입 경쟁에서 보호한다는 전체적 역할도 갖고 있다. 수입제한중에는 확실히 관세도 포함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인 비관세적 성질을 가진 장벽, 즉 검역에의한 제한(quarantine restrictions), 북반구(北半球)제국의 수입에대한 자연지리적 장벽,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우기일란드 간의 경제우호 협정에따른 사전협의요건 등을 들수있다. 그밖에도 최근에는 유럽 치아즈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나, 현행의 규제 하에서는 反덤핑세(税) 혹은 상쇠관세의 부과등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여러 주요 낙농수출제국이 취하고 있는 국내낙농정책의 결과, 국제가격이 국내가격(관리하에 있는)을 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적·전문적으로 말해 「넘핑된」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음료용 생유부문은 보호만 없었드라면 보다싼

수입 유제품에게 밀려났을지도 모를 가공원료용 생유가 음료용으로 전환하는것을 막기위한 규제에 의해 경쟁에서 보호되고있다. 우유는 특히 U-HT처리가 된것은 액체대로 수입이 가능하나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될 전망은 없다. 따라서 음료용 우유부문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우선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의 가공원료용 생유가 음료용 부문으로 진출할것이라 보고있다.

낙농산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때, 각 부문에 대한 일관된 정책에 관해 고찰하지 않으면 않된다. 특히, 음료용 생유부문의 보호를 유지하면서 한편 가공원료용 생유부문의 보호를 감소하려고하면, 낙농산업내 및 타산업간의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낙농산업의 종합적인 재검토에 임했을때, 양부문을 규제하고있는 제도적 메카니즘 양부문의 상호관계, 양부문에대한 정부의 정책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아래에 그것을 해설해 보겠다.

2. 飲用生乳部門

(1) 制度上の決定

낙농가가 음료용부문에 참여하려 할때는 그 생산과 유통면에서 각종의 규제를 받게 된다. 각주(州)에는 법률에 의거한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

으며, 생산할당, 가격결정, 생산과 판매지역의 설정등이 관장되고 있다. 음료용 우유의 수요 견적(見積)을 기초로, 각주 당국은 허가제에 의한 시장 참여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생유 생산의 기준은 개인당 할당량 혹은 계약서에 의해 정해지며, 주당국이 직접 배분하거나 혹은 각지역의 처리공장 생산할당량에 의해 간접적으로 배분된다.

또한 주정부는 품질 및 위생기준을 확보하여 행정적으로 결정된 가격에 따라 년간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조정을 할수 있도록, 우유의 생산량 규제를 위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에 의해 소비자는 생유공급의 계절적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가격으로 안정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1960년까지는 가공원료용 생유의 품질요건은 음료용 생유만치 엄격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두개의 부문으로 나뉘어진 이론적 근거이며, 음료용 생유의 생산자 가격이 높은 것을 부분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었다. 1960년 이후 이들 두 가지 용도에 생유 품질 및 위생기준의 차이는 점차 적어졌으며, 가공유제품의 국제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현재의 생유위생 기준은 최종의 용도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이 되어 있다. 이때문에 가공원료용 생유에 대한 음료용 생유가격 프레미엄의 이론적 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음료용 생유부문 참여의 자유화에 대한 어떠한 결정과도 관계가 있다.

음료용·가공원료용 생유에는 품질상의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료용 생유에는 보상적인 가격 프레미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년간 안정된 비율로 생산되는 생유의 코스트가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코스트는, 보충적으로 급여되는 사료비(특히 겨울철)와 그 인건비의 과다지출, 방목초지의 개량, 관개(灌溉), 사료의 수확과 저장을 위한 자본코스트가 포함된 것이다.

음료용 생유가격은 보통 1년에 두번 설정한다. 그러나 생산자 가격은 주에 따라 다르다. 1982년

의 각주 가격은 아래와 같다.

뉴싸우스웨일즈주	28.2 센트/l
빅토리아주	26.5 센트/l
퀸즈란드주	31.9 센트/l
서오스트레일리아주	26.6 센트/l
남오스트레일리아주	26.6 센트/l
타스마니아주	27.0 센트/l

각주마다 음료용 우유의 규제기관이 있어 생산·구입·공급·수송·처리·저장·포장·판매·발송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그 세부(細部)는 주마다 다르다. 각주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빅토리아주 : the Victorian Dairy Industry Authority가 우유에 대한 제1의 책임자가 되어 음료용 우유의 적절한 공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공급보증을 위한 생유청부 생산제도(milk-Contracting System)를 취하고 있다. 일부 소수의 농가는 지금도 생유의 공급계약을 갖고 있으나, 음료용의 대부분은 아직도 처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리업자는 낙농가의 생유 출하량에 따른 비율로 음료용 생유의 프리미엄을 농가에 배분하고 있다.

(나) 뉴싸우스웨일즈주 : 이곳에서는 낙농가에게 음료용 생유 할당제도를 취하고 있다. 당국은 12개월간 생산을 계속하고 신규로 등록된 낙농가에 대해서는 주(週) 당 800l의 최저할당량 범위를 정한다. 당국은 유자격 농가에게 매년 추가할당을 줌으로써 주당(適當) 최저 2,000l 까지 모든 사람에게 할당 증가를 시도하고 있다.

음료용 우유의 판매증가를 채우기 위해 그해의 할당량의 최저 110%가, 1개 월4주(週)로 계산된 13개월간 매주 생산되어야 한다. 또, 포기된 할당범위의 출자에서 추가할당을 얻기 위해 농가는 12개월간 할당범위의 120%를 생산해야 한다. 할당량의 100~110%의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하등의 변경도 없으나 12개월간 100% 이하의 생산을 한 농가는 다음해의 할당량이 감

소된다. 빅토리아주와 마찬가지로, 할당량을 완전히 소화시킨 낙농가에게는, 초과량 또한 저렴한 가공원료용 생유가격이 아닌 음료용 생유가격으로 지불된다. 이러한 할당제도는 과잉 생산에의 강한 인센티브를 가져온다. 할당량 미달농가(당분간 부활되지 않는다)가 절мер져야할 장기적 코스트는, 생유 생산이 년간 유지량에 따른 코스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추가 할당의 가능성 때문에 생산자에게는 120% 이상의 단기적인 필요량 초과 생산을 조장하게 된다.

(다) 타스마니아주 : the Tasmanian Dairy Industry Authority가 흰 우유, 가공우유 및 후랫슈크림의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1979년 까지 우유는 농가의 생산할당을 통해 공급되어 왔으나 이해에 최저 5개년 이행경과(移行経過) 기간이 시작되어 이행기간 중의 할당규모가 개개의 농가에서 가공처리업자에게 옮겨지게 되었다.

(라) 퀸즈랜드주 : 타주의 기관과는 달리 Queensland Milk Board는 최고와 최저의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최저가격은 브리스번우유지구(地區) 내에서 처리되는 생유 가공업자에게 지불된다. 음료용우유의 배달 판매자 및 우유판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최고가격이 설정되어 있고, 소매가격에는 최저와 최고가격이 정해져 있다. 음료용 생유의 생산은 할당제이며 그 할당량은 포기(판매) 할수도 있다. 1980/81년도 음료용생유 생산권리 양도가격은 1당 50불이었다. 농가는 할당범위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것은 적어도 할당제한을 이용하여 해당 농가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만큼의 음료생유를 생산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마) 남오스트레일리아주 : the Metropolitan Milk Board of South Australia는 한정된 일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유를 취급하며, 아데레드 시내의 소매관계자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해당농가가 아데레드지역에 있는가 혹은 그다지 수익성이 좋지 않은 남동지역에 있는가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는 있으나 모든 농가가 음료용

생유 판매에 대한 프레미엄을 받고 있다. 이같은 가격제도는 생산자의 충산을 조장하고, 충산된 생유의 일부에 대하여도 음료용생유에게는 프레미엄이 주어진다(생산량의 일정한 고정된 비율에 대해 지불된다). 이 때문에 과잉 충산된 생유 생산의 표면상 가격은 인위적으로 증가된다.

(바) 오스트레일리아주 : the Western Australian Dairy Industry Authority는 음료용생유, 크림용생유, 특별유제품용, 생유의 농가 할당 범위를 관리 실시하고 있다. 특별 유제품용 생유의 규제는 요구르트와 같은 특정제품용 생유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특별 유제품용 생유에 지불되는 가격은 가공원료용 생유가격보다 높다(그러나 음료용 생유 가격보다는 저렴하다) 따라서 서(西)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뉴싸우스웰즈주와 같이 농가는 주어진 할당범위를 밀들게 출하하면 할당범위가 감소된다. 따라서 농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음료용생유를 과잉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같은 각주의 제도를 고찰할 때 중요한 것은, 이들 제도가 음료용우유를 필요 이상의 과잉 생산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특히 뉴싸우스웰즈주의 경우가 현저하며 여기서는 할당량을 초과해서 생산하는 인센티브가 제도 속에 짜여져 있다. 따라서 농들이 좋은 생산자는 음료용의 공급량을 늘릴수가 없어 한층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결국 소비자나 납세자가 그 부담의 증가를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된다.

뉴싸우스웰즈주, 서 오스트레일리아주, 그리고 정도는 낮으나 퀸즈랜드주에서는 농가 할당에 대해 년간 일정수준의 공급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며, 생산코스트가 유가(乳價)를 웃도는 겨울철에도 생유가 충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註 1) 西오스트레일리아주의 「특별유제품」에는 가공우유(가공脫脂牛乳를除外), 요구르트(無脂肪타입을除外) 및 加工用크림이 포함된다.